

2013년 시니어 공동창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공동창업을 희망하는 40세 이상 시니어 및 창업초기기업(사업자등록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운영중인 시니어가 전문성·경력·특기 등을 활용하여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구현하는 공동창업(사업화) 활동 지원을 위해 『2013년 시니어 공동창업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년 8월 5일

중소기업청장

1. 지원개요

□ 목 적

- 시니어의 전문성, 창조성 등이 융합된 우수한 사업아이템이 성공 창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술과 자본 등 결합을 통한 공동 창업을 지원

<시니어 공동창업(사업화)의 개념>

40세 이상 시니어의 창조적 아이디어, 자본 등과 공동창업자의 기술 등이 융합, 2인 이상~5인 미만이 투자해 공동으로 창업·경영하는 비즈니스 형태

□ 예산 및 지원규모

- 예산규모 : 220백만원
- 지원규모 : 22개 공동창업팀
- 지원금액 : 10백만원/팀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 '13. 8월 ~ 11월(4개월)

□ 지원대상

- 공동창업을 희망하는 40세 이상 시니어(1975.1.1 이전 출생자)
- 창업초기기업(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운영중인 시니어
 -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을 신청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

□ 지원분야(업종) : 시니어 적합창업분야(6대분야*)

- 6대 분야 : IT/인터넷, 아이디어사업, 사회적기업, 농업, 전문 서비스, 제조업
- 지원제외업종 : 음식, 도·소매업, 숙박업등 소상공인 과잉창업분야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지원금액 : 10백만원(1개 공동창업팀당)

□ 지원내용 : 공동창업팀(2인이상~5인 미만)이 협력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아이템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제반 비용

구 분	세 부 지 원 내 용
공동창업비	공동창업계약서 작성을 위한 변호사 등 수임료, 컨설팅비
아이템개발비	외주용역비, 문헌구입비, 견학비, 컨설팅비, 지적재산권(특허비 등)
시제품제작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임차비 등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제비용
마 케 팅 비	전시회참가비, 마케팅조사비, 행사비, 홍보비

* 인건비·운영비(일반수용비, 회의비, 여비, 식비 등) 및 컴퓨터, 차량운반구 등 자산취득비용은 불인정

3. 신청요건

□ 시니어 공동창업을 희망하는 40세 이상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초기 기업으로서 아래의 공동창업팀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자

[공동창업팀 신청요건]

구 분		신 청 조 건
팀 구성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창업팀은 2인 이상 ~ 5인 미만으로 구성 및 신청예시 ① 시니어+시니어, ② 시니어+청년, ③ 시니어+청년+시니어
공동 창업 팀	사업주관자 (사업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세 이상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초기기업 - 사업신청서 제출시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사업자등록)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초기기업
	사업참여자 (공동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세 미만의 사업참여자도 참여 가능 가족(배우자, 자녀 등), 친인척 등의 경우 사업참여자로 참여 불가 단, 직장동료·친구의 경우, 사업참여자로 참여시 인정

□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제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시니어 공동창업 육성사업의 참여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조건(필수)

- 선정대상은 협약완료일까지 공동창업에 대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공동창업계약서 등) 제출

〈 시니어 공동창업의 범위 〉

- ① 사업주관자와 사업참여자 공동 사업자 등록
- ② 사업주관자 단독 사업자등록 및 참여자와의 이익배분 관련 계약(1년 이상)
- ③ 사업주관자 단독 사업자등록 및 참여자 제공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채용 계약 형태(1년 이상) 등

4. 사업 추진절차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서류(서면)평가 → 발표(PT)평가 → 최종 선정

* 신청접수 미달 등의 경우 서류평가 생략 가능

□ 평가항목 : 팀 구성원의 역량, 아이템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 주요 평가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6.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3.8.5(월) ~ 8. 14(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신청

□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관련 증빙서류 1부, USB 1개*
 - * USB에 사업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저장하여 제출
- 접수·문의 : 소상공인진흥원 지식서비스부 공동창업 담당자
 - * 주 소 : (302-82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032번지 동서빌딩 7층
소상공인진흥원 지식서비스부
 - * 문의처: (042) 363 - 7609

□ 관련 사이트(인터넷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 : www.smba.go.kr
- 소상공인진흥원 : www.seda.or.kr
- 창 업 넷 : www.changupnet.go.kr

7. 유의사항

- 1개의 공동창업팀은 1개의 아이템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
- 선정결과 발표 및 향후 일정은 개별통보

접수번호	-
-------------	---

2013 시니어 공동창업 육성사업 사업신청서

팀 명	<i>한글 5자 이내로 작성</i>				지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창업희망자 <input type="checkbox"/> 창업초기기업
공동창업 희망분야	<input type="checkbox"/> 전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아이디어사업 <input type="checkbox"/> IT/모바일/인터넷 <input type="checkbox"/> 농업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기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주관자	성명	김경천	성별	남	업 체 명	
	연령		지역	서울	개업년월일	
사 업 기 간	2013. . . . ~ 2013. . . .				사업비	10백만원
창업준비기간	2013. . . . ~ 2013. . . .				창업예정시기	2013.12.20
구 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관자	김경천	남	70.3.18	010-8282-8253	kckim@naver.com	
참여자	손오공	남	70.3.18	010-1234-4321	blue@daum.com	
	홍길동	여	70.5.20	010-5678-5678	black@naver.com	
	이순신	남	70.8.15	010-9101-9101	green@daum.com	

위와 같이 2013년 「시니어 공동창업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 [첨부 2] 관련 증빙서류 1부

2013 . 8 . .

사업주관자 : 김 경 천 (인)
 사업참여자 : 손 오 공 (인)
 사업참여자 : 홍 길 동 (인)
 사업참여자 : 이 순 신 (인)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 ※ 시니어 공동창업에 참여하는 자의 성명을 모두 기재(칸 추가하여 작성가능)
- ※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관련 증빙서류 1부, USB 1개

『2013년 시니어 공동창업 육성사업』

사 업 계 획 서

2013 . 8.

공동창업팀명		사업주관자명	
연락처		제출일자	

목 차

1. 팀(Team)개요	1
1. 팀 구성현황	1
2. 팀원별 전문성	1
3. 그간의 추진현황	2
2. 공동창업개요	2
1. 공동창업 아이템	2
2. 팀원별 주요역할	2
3. 공동창업 기대효과	3
3. 세부 운영계획	3
4. 향후 추진일정(안)	3
5. 소요예산	4
1. 세부내역	4

2013년 시니어 공동창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1 팀[Team] 개요

□ 팀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성별	출생년월일
사업주관자	홍길동		
사업참여자			

- * 칸을 추가하여 작성
- * 이력서는 별도 제출[필수]

□ 팀원별 전문성

성 명	전문분야	경력년수	주 요 내 용

- * 관련 증빙자료 별도 제출

□ 그간의 추진 현황

○ 추진 현황

- ◆ 사업주관자의 공동창업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작성
- ◆ 공동창업 준비기간 및 공동창업 예정시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2 공동창업 개요

□ 공동창업 아이템/아이디어

- ◆ 공동창업 업종/아이템/아이디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공동창업시 팀원별 주요역할

- ◆ 공동창업시 팀원별 주요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공동창업의 기대효과

◆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공동창업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를 작성

3 운영계획

◆ 기타 운영계획을 자유롭게 작성

4 향후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5

소요예산

□ 세부내역

(단위, 원, %)

항목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율
공동 창업비				
아이템 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계			10,000,000	100.0

* 인건비, 운영비(일반수용비, 회의비, 여비, 식비 등) 및 컴퓨터, 차량운반구 등 자산취득비용은 불인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손오공)

※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경우 □ 안에 “✓”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원은 본 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기반으로 『2013년 시니어 공동창업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I.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 처리 목적

- 『2013년 시니어 공동창업 육성사업』 신청·접수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일자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3자 제공안함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사항없음

5.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6.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경과 시 보유 문서 파기

7. 정보주체의 권리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함

2013년 8월 일

성명 : (서명)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참고 1

사업비 편성기준표

세부내역		편성지침
공동 창업비	컨설팅비	▪ 1일 20만원 편성(1일 4시간 이상)
	변호사 수임료	▪ 1회 40만원 이내 편성
아이템 개발비	외주용역비	▪ 아이템 개발을 위해 외부업체에 의뢰하기 위한 실소요비용
	문헌구입비	▪ 창업활동에 연관된 관련 서적 30만원 이내 편성
	견학비	▪ 박람회 견학을 위한 입장료 실소요비용
	컨설팅비	▪ 1일 20만원 편성(1일 4시간 기준)
	지재산권비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실소요비용
시제품 제작비	외주용역비	▪ 시제품 제작 관련 외부업체에 의뢰하기 위한 실소요비용
	재료비	▪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구입 실비용
	기자재임차비	▪ 지원자가 보유하지 않은 기자재를 외부에서 임차할 경우의 실소요비용(단, 기자재구입비는 불인정)
마케팅비	전시회참가비	▪ 제품홍보를 위한 관련 국내·외 참가등록비 및 부스임차비용
	마케팅조사비	▪ 시장수요 파악 등 마케팅조사를 위한 외주용역비
	행사비	▪ 마케팅목적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100만원 이내 편성)
	홍보비	▪ 카달로그 등 홍보비 및 광고비 * 단, 홈페이지 제작비 불인정

* 인건비, 운영비(일반수용비, 회의비, 여비, 식비 등) 및 컴퓨터, 차량운반구 등 자산취득비용은 편성 불가(불인정)

참고 2

시니어 적합창업 6대분야 및 40개업종

분 야	시니어 창업 적합업종	비고
전문 서비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술 컨설팅 ▪ 라이프 컨설팅 ▪ 무역 ▪ 기술·인력 중개 ▪ 교육·강의·저술 ▪ 창업지원컨설팅 ▪ 그린 컨설팅 ▪ 금융·재무 컨설팅 ▪ 비즈니스 아웃소싱 ▪ 시니어 서비스 창업 	
제조업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특화 지식서비스 ▪ 전통특화 제조업 ▪ 전문공방 ▪ 신재생에너지 	
아이디어 사업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레저·예술·공예 ▪ 그린·에너지 사업 ▪ 아이디어형 소매업 ▪ 아이디어형 교육 ▪ 실버도우미 ▪ 레저유통업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프랜차이즈경영 ▪ 생활·가정 서비스 	
IT / 인터넷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서비스업 ▪ IT 융복합서비스 ▪ 정보통신감리 	
농업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 농특산물 재배·가공 ▪ 농촌기반 비즈니스 ▪ 귀농서비스 ▪ 농특산물 융복합비즈니스 ▪ 농촌문화관광 ▪ 양식서비스 ▪ 산림복합업 	
사회적 기업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 비즈니스 ▪ 지역사회 서비스 ▪ 농특산물 브랜드비즈니스 ▪ 지역컨텐츠 융합서비스 ▪ 지역커뮤니티 비즈니스 ▪ 복지지원 서비스 	

참고 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중	귀금속 도매업
46722 중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5	숙박업 (단, 생계 형은 지원가능)
561 중	연면적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주차장 면적 포함)
5621	주점업 단, 기타주점업(56219) 생계 형은 지원가능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부동산컨설팅업 (예: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501	일반 교과 학원 (예: 일반교과학원, 지역아동센터(일반교과교육), 공부방(일반교과교육),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검정고시 학원, 고입학원, 과외학원, 교습소(일반교과교습소), 대입학원, 모습학원운영, 속셈학원, 일반강습소 운영(진학입시), 입시학원운영, 진학학원, 학원(일반강습소))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단, 생계형은 지원가능)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 생계형 기준은 **자금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89,079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21), 식당업(561중), 일반교과학원(85501),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융자대상에 포함(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일반교과학원업종 중

- 논술학원(85699), 공부방(독서위주, 90212), **예체능계열, 외국어** 지원가능
- ☞ 단, 사업자등록증 업태나 업체명에 '입시', '과외' 등이 들어간 경우 지원제외

▶ 전문업종 중

- 약국(47811), 한약방(47811)은 도소매업으로 지원가능
- 한의원(86203)은 보건업으로 지원불가
- 치료목적의 미술심리치료, 성장지원센터, 눈동자운동, 유아심리치료, 척추교정서비스, 언어치료서비스, 뜸치료서비스, 가정치료사, 검안소, 교정사(언어장애), 말더듬교정사, 물리시술원, 물리요법서비스(유사의료), 뼈교정 등은 유사 의료업(86902)으로 지원불가
- ☞ 사업자등록증상에 아동관련상담서비스(87299)로 표시되나 사업범위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프로그램(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 등)을 병행하는 경우 → 치료목적의 보건업에 속하므로 지원불가

▶ 숙박업 중

- 숙박이 가능한 고시원(텔)(55909)은 생계형 기준 만족시 지원가능

▶ 주점업 중

- 주점업은 지원제외 단 기타 간이주점(56219)은 생계형인 경우 지원가능

▶ 도소매업 중

- 귀금속소매(47830)만 지원가능
- 전자담배 도매업은 지원불가
-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노래연습장이 아닌 주류판매가 가능한 노래방은 지원불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는 지원가능